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3호의3서식] <신설 2016. 7. 20.>

건설기계사업 [ ] 양도·양수 [ ] 합병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10일

양도인 (합병 전)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	사업의 종류	등록종별
	사업장 규모	
	사업장 소재지	
양수인 (합병 전)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	사업의 종류	등록종별
	사업장 규모	
	사업장 소재지	
양도·양수 후 (합병 후)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	사업의 종류	등록종별
	사업장 규모	
	사업장 소재지	
양도·양수 (합병)원인	[ ] 매매 [ ] 상속 [ ] 증여 [ ] 기타	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4조의2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.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건설기계사업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증 발급
신고인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시·군·구)		

210㎜×297㎜[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